

안녕하십니까?

2020년 3월 1일부터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학교폭력예방 및 사안처리 관련 사항을 안내하오니,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.

○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 변경 사항

1. 학교폭력 관련 업무 교육지원청 이관

- 학교폭력 심의: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(학교)→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(교육지원청)
- 학교: 전담기구(사안접수, 보호자 통보, 교육지원청 보고, 사안조사·결과 보고, 1/3 학부모위원)
- 교육지원청: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(10명~50명 이내 구성, 전체위원의 1/3 학부모위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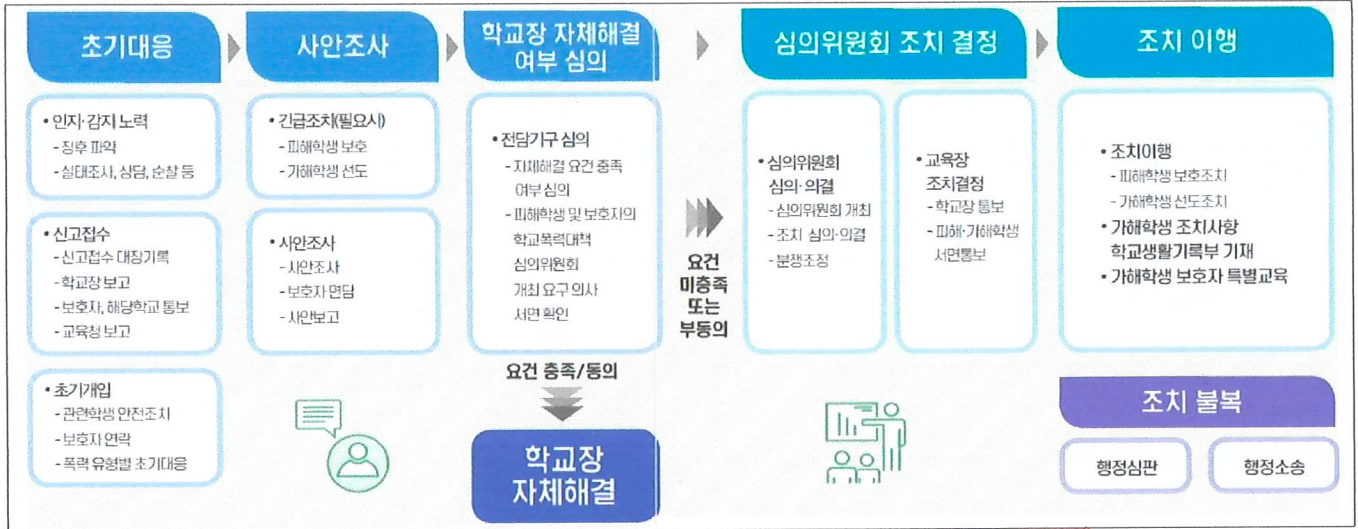
2. 학교장 자체 해결제 도입(학폭심의위원회의 심의 요청하지 않고 학교자체 종결 처리를 의미)

-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2의 요건 충족시(경미한 사항) 학교장 자체해결 가능
 - 2주 이상의 신체적·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
 -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-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
 -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, 진술,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
- ※위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학부모의 서면 동의가 없으면 학폭심의위원회 심의 개최
-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: 회복적 서클, 어울림 프로그램 등을 통한 관련 학생 간 관계회복 지원

3.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(제1호,제2호,제3호) 생활기록부 조건부 기재 유보

- 경미한 사건이나 쌍방의 폭행 사실 인정되는 학생들에게 1회에 한해 처분사실 기재 유보
- 기재유보 사항이 아닌 경우[조치사항 미이행시, 조치 후 동일 학교급에 재학하는 동안 다른 학폭 사건으로 제17조1항의 조치(가해학생조치 1호~9호)를 받은 경우]

4. 학교폭력 사안처리 흐름도



2020년 4월 6일

명진고등학교

